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53호 2018. 7. 11.(수)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85호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8-8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14
거창군 고시 제2018-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계수천) ····· 16
거창군 고제면 고시 제2018-1호 고제면문화체육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17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86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0
거창군 공고 제2018-86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9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3
거창군 공고 제2018-863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7
거창군 공고 제2018-868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알림 ····· 57
거창군 공고 제2018-869호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가끌천) ····· 59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8-9호 제2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60

회 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8 - 85호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거 창 군 수

1. **목 적**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시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문 의 처** : 거창군 건설과(전화 055-940-3533, 팩스 055-940-3529)

4.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 : 277개소(붙임참조)**

5.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관리기관 : 거창군청 건설과**

6.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일 : 2018. 07. 10.**

붙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대상지 1부. 끝

[붙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소교량	범골1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208-4	216-2	2018년 이후
소교량	범골2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212-3	208-3	2018년 이후
소교량	범골3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65-1		2018년 이후
소교량	사동1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238	240	2018년 이후
소교량	사동2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242	244-2	2018년 이후
소교량	구산1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898-2		2018년 이후
세천	동곡큰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250	1224-8	2018년 이후
농로	동곡큰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139	1285	2018년 이후
취입보	거기1보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994-2		2018년 이후
취입보	거기2보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274		2018년 이후
취입보	거기8보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710-10		2018년 이후
세천	보고낭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99	476	2018년 이후
세천	서낭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282	274	2018년 이후
세천	고대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1	689	2018년 이후
세천	개울마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776-1	863-1	2018년 이후
세천	작은승지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28	862	2018년 이후
세천	고반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452	444	2018년 이후
세천	뒷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1113	1103	2018년 이후
세천	충천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237	238	2018년 이후
세천	새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722	298	2018년 이후
세천	용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850-1	820-1	2018년 이후
세천	뜻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 95	54-1	2018년 이후
세천	마을웅이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859	868	2018년 이후
세천	서잿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942	950-7	2018년 이후
세천	작은통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417	558	2018년 이후
세천	거기교뜻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1283	1312	2018년 이후
세천	미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409	1419	2018년 이후
세천	오목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25	786-1	2018년 이후
세천	기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48	45-3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희동마을앞 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92	791	2018년 이후
세천	미기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817	884	2018년 이후
세천	대바미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19	291	2018년 이후
세천	아랫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102	1105	2018년 이후
세천	도치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125	962	2018년 이후
세천	뜻득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227-2	153	2018년 이후
세천	수자지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414-1	418	2018년 이후
세천	논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013	902	2018년 이후
세천	넘터세천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1907	1920	2018년 이후
소교량	군암세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442-1		2018년 이후
소교량	장수2세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649-1		2018년 이후
소교량	구수세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105-1		2018년 이후
소교량	금광세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산포리	966-2		2018년 이후
세천	용전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714-1	145-1	2018년 이후
세천	송산새마을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1231	829-2	2018년 이후
세천	노현앞들세천(개금들들)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노현리	692	258-1	2018년 이후
세천	용전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792	106-2	2018년 이후
세천	원촌뜻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노현리	698	420-8	2018년 이후
세천	원촌경구담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노현리	24	99	2018년 이후
세천	장지백중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신촌리	622	41	2018년 이후
세천	신촌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신촌리	1990	1083-6	2018년 이후
세천	화동뜻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노현리	1254	1244	2018년 이후
세천	동호앞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동호리	산24-4	1058	2018년 이후
세천	송산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255	274-9	2018년 이후
세천	개화안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신촌리	산69	1456	2018년 이후
세천	죽림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죽림리	1050	982-5	2018년 이후
세천	한기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한기리	751-9	851-1	2018년 이후
세천	구수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군암리	185	139	2018년 이후
세천	아주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동양면	신촌리	1971	819-1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구암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490	1313-6	2018년 이후
세천	하곡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1014	762	2018년 이후
세천	금광앞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497-1	978	2018년 이후
세천	어인도로변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621	905	2018년 이후
소교량	늪은다리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752-2		2018년 이후
소교량	고제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203-6		2018년 이후
소교량	손창농로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170-1		2018년 이후
소교량	개명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82		2018년 이후
세천	구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980	331-1	2018년 이후
세천	상포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740	1652	2018년 이후
세천	문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271	675	2018년 이후
세천	내계뜻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587		2018년 이후
세천	쪽다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37		2018년 이후
세천	당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629		2018년 이후
세천	시항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1202		2018년 이후
세천	병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1205		2018년 이후
세천	노동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255		2018년 이후
세천	개상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635		2018년 이후
세천	갈밭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510		2018년 이후
세천	창선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산14-5		2018년 이후
세천	모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78		2018년 이후
세천	용문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250-7		2018년 이후
세천	호두나무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189-2		2018년 이후
세천	나래산골아래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159-2		2018년 이후
세천	나래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189-3		2018년 이후
세천	건너바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315		2018년 이후
세천	남은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57		2018년 이후
세천	초장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98		2018년 이후
세천	막덕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64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만석위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562		2018년 이후
세천	내계위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318		2018년 이후
세천	나래산골위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2018년 이후
세천	상천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강천리 935	상천리 254	2018년 이후
세천	황산1구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27		2018년 이후
세천	당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210-3	산38	2018년 이후
세천	무월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72-2	367-1	2018년 이후
세천	뱀당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9-6	1001	2018년 이후
세천	석동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524	738-14	2018년 이후
세천	황산2구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40	172-5	2018년 이후
세천	거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장기리 611-64	남산리 126	2018년 이후
세천	금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81	산85-3	2018년 이후
세천	상천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952	612	2018년 이후
세천	약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92-3	19	2018년 이후
세천	안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402-2	산15-10	2018년 이후
세천	안당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93-6	341-20	2018년 이후
세천	영풍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산22	154-3	2018년 이후
세천	영풍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108-6	100-1	2018년 이후
세천	석동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478	643	2018년 이후
세천	석동3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67	산115	2018년 이후
세천	뱀당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692	산84-2	2018년 이후
세천	무월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114-5	285-2	2018년 이후
세천	용편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958	942	2018년 이후
세천	병항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382	1382	2018년 이후
세천	신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산 11-1	812-1	2018년 이후
세천	주암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992-5	1992-5	2018년 이후
세천	지동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산 4-1	1711-8	2018년 이후
세천	계동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산 82-1	270	2018년 이후
세천	소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808	808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소교량	엄대세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348-1	1348-1	2018년 이후
소교량	고대세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758-6	758-6	2018년 이후
세천	임불마을 아래 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620	1732	2018년 이후
세천	춘전 학감미 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402	산124-1	2018년 이후
소교량	자하뜻들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376	5	2018년 이후
세천	대사앞들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45	15	2018년 이후
세천	분부골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	1	2018년 이후
세천	큰골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98-3	187	2018년 이후
세천	용동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992	658	2018년 이후
세천	가천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19	384-10	2018년 이후
세천	신촌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798-1	454	2018년 이후
세천	안양골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492-1	444	2018년 이후
세천	신촌앞들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511	571	2018년 이후
세천	하나로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21	199	2018년 이후
세천	영학골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572-1	1471	2018년 이후
세천	관동안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91	891	2018년 이후
세천	관동앞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4-1	산4-1	2018년 이후
세천	대나무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23	산23	2018년 이후
세천	번득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36-7	산136-7	2018년 이후
세천	번득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96	896	2018년 이후
세천	안세안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18	산118	2018년 이후
세천	윤지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23	618-2	2018년 이후
세천	구사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970-4	967	2018년 이후
세천	구사안길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86	1012	2018년 이후
세천	김은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756	681	2018년 이후
세천	상감악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600-1	1607-2	2018년 이후
세천	성지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139	산139	2018년 이후
세천	신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845	574-1	2018년 이후
세천	신기안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110-3	1110-3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작골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22	산95	2018년 이후
세천	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751	751	2018년 이후
세천	북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산98	882-3	2018년 이후
세천	솔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산102	758	2018년 이후
세천	하대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19-1	844-1	2018년 이후
세천	하대앞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1610	1610	2018년 이후
세천	강악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442	산171	2018년 이후
세천	대바골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503	1503	2018년 이후
세천	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996	1002	2018년 이후
세천	보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1109	1109	2018년 이후
세천	여시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975	993	2018년 이후
세천	각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466	464	2018년 이후
세천	골다리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42	106-1	2018년 이후
세천	내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82	82	2018년 이후
세천	뜻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102	1091	2018년 이후
세천	송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542	26-2	2018년 이후
세천	여시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산66	975	2018년 이후
세천	장마통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78	174-5	2018년 이후
세천	배나무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114	1189	2018년 이후
세천	수집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902-9	902-5	2018년 이후
세천	밭재들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746-11	산145	2018년 이후
세천	소룡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609	1622-1	2018년 이후
세천	소룡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625	1625	2018년 이후
세천	늘목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752	765	2018년 이후
세천	상유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산115	778-4	2018년 이후
세천	예동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768-9	1768-9	2018년 이후
세천	하유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730-4	1730-4	2018년 이후
세천	가막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창수리	산60-1	536-1	2018년 이후
세천	갈밭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창수리	산147	1125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삼구발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산62-7	658	2018년 이후
세천	수동안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1248	1248	2018년 이후
세천	청용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174	157-2	2018년 이후
세천	황득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산62	1248	2018년 이후
소교량	도산당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1008		2018년 이후
소교량	상마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	876		2018년 이후
소교량	도산당5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1088-1		2018년 이후
소교량	상마3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	513		2018년 이후
소교량	양지1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601		2018년 이후
소교량	용전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	891		2018년 이후
소교량	대학동1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248		2018년 이후
소교량	도산당4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1086		2018년 이후
소교량	상마6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	876		2018년 이후
소교량	생초1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184-1		2018년 이후
소교량	대학동3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1011		2018년 이후
소교량	생초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125-6		2018년 이후
소교량	학산1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221		2018년 이후
소교량	생초3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227-1		2018년 이후
소교량	대학동4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582		2018년 이후
소교량	석강1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844		2018년 이후
소교량	양지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757-1		2018년 이후
소교량	음지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287-1		2018년 이후
소교량	대학동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931		2018년 이후
소교량	석강2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484-1		2018년 이후
소교량	음지1소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352		2018년 이후
세천	강나무술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	산8-1	501	2018년 이후
세천	대방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	산8-21	678	2018년 이후
세천	녹동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	840	809	2018년 이후
세천	도산당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210	1174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병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	727	1078-1	2018년 이후
세천	꼬쪽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18	107	2018년 이후
세천	양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리	698	882	2018년 이후
세천	농촌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1554	864	2018년 이후
세천	치약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	1067-62	1001-32	2018년 이후
세천	용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리	193	279	2018년 이후
세천	도촌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614	1288	2018년 이후
세천	고주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	97	197-4	2018년 이후
세천	만당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리	1194-15	1162-1	2018년 이후
세천	학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리	1357-1	1180-1	2018년 이후
세천	미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	169	193-10	2018년 이후
세천	안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리	1189	1180-7	2018년 이후
세천	예말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	941	615	2018년 이후
세천	박유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	886-1	1739-10	2018년 이후
세천	도통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	951	529-2	2018년 이후
세천	미수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	855	219-8	2018년 이후
세천	사양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	1420	192	2018년 이후
세천	지시방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	1182	741	2018년 이후
세천	돌말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1271	1822	2018년 이후
세천	심방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	36-9	1370-13	2018년 이후
세천	갈발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820	921	2018년 이후
세천	돌쪽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46	885-1	2018년 이후
세천	우목배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62	52	2018년 이후
세천	성주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	144-2	140-13	2018년 이후
세천	김은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	358	417-1	2018년 이후
세천	우혜큰땅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625	1701-2	2018년 이후
세천	세리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535	1558	2018년 이후
세천	재발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610	1906	2018년 이후
세천	천진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588	1608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내미지평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521	1502	2018년 이후
세천	상새미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473	2078-1	2018년 이후
세천	하감월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425	1313	2018년 이후
세천	중감월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972	1022	2018년 이후
세천	상감월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13	885	2018년 이후
세천	소라정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54	411	2018년 이후
세천	왕박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48	440	2018년 이후
세천	먹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2082		2018년 이후
세천	싸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2018년 이후
세천	뽕땅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2018년 이후
세천	안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597	661	2018년 이후
세천	개명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323		2018년 이후
세천	공수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305		2018년 이후
세천	뜻들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134	1174	2018년 이후
세천	뽕땅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196	1230	2018년 이후
세천	안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902		2018년 이후
세천	뱅거리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296		2018년 이후
세천	국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315-2		2018년 이후
세천	신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302		2018년 이후
세천	박암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303		2018년 이후
세천	작은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소리	1408	1703	2018년 이후
세천	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소리	1327	1209	2018년 이후
세천	곳은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소리	1347	1689	2018년 이후
세천	원오동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소리	1389	1745	2018년 이후
세천	땅먹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소리	383	203	2018년 이후
세천	내촌뜻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소리	587	917	2018년 이후
세천	송정큰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876	1868-3	2018년 이후
세천	임암터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708	2148	2018년 이후
세천	쪽다리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018년 이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시설명칭		위 치						정비계획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합계	277							
세천	금강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018년 이후
세천	수개뜻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018년 이후
세천	상박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018년 이후
세천	구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73		2018년 이후
세천	갈바라기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산47	1764	2018년 이후
세천	음뜩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414		2018년 이후
세천	동천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74		2018년 이후
세천	산막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27	1621	2018년 이후
세천	구룡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568	1555-1	2018년 이후
세천	도장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720		2018년 이후
세천	작은가락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96		2018년 이후
세천	달밭1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97-3		2018년 이후
세천	달밭2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97-1		2018년 이후
세천	장목골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772		2018년 이후
세천	개저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281		2018년 이후
세천	봉답세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097		2018년 이후

거창군 고시 제2018 - 8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1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2길 59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7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녹동3길 52-18	2009-04-01	2018-07-11	마을형태가 달아나는 누루가 어미를 돌아보는 것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531-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12-16	2009-04-01	2018-07-11	당대고개가 있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531-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12-18	2009-04-01	2018-07-11	당대고개가 있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67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66	2009-12-28	2018-07-11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616-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293-20	2009-12-28	2018-07-11	서쪽 산수리 골짝과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35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2길 59	2009-12-28	2018-07-11	우륵길의 시점으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7 - 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형 미 옥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281-50
하 천 명 (하천등급)		계 수 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220번지 등 2필지		
	면 적	일시점용: 130.0㎡(국유지 118.0㎡, 사유지 12.0㎡)		
	점용기간	일시점용: 2018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사용		

거창군 고제면 공고 제2018 - 1호

고제문화체육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제면 고제문화체육회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고 제 면 장

1. 사 업 명 : 고제문화체육회관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장
3. 설치대상지

구 축 장 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운영기관	비고
경남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46	1대	24	고제면	

4. 행정예고 기간 : 2018. 7. 6. ~ 7. 26 (20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17. 7. 6. ~ 7. 26 (20일간)
6.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 고제면사무소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011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 전 화 :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3

▶ 팩 스 : 055)940-745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고제면체육회관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 토 의 견 (의견제출내용)				

고제문화체육회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고제면장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18 - 861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중로1-11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1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	거창	대평	중로	1	11	280.0	20.0	6,437	거창읍 대평리 441-6번지~ 440-68번지	건설교통부고시 제194호 (1976.12.7.)	2018.10. ~ 2019.12.31.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 람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중로1-11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3,115.1	3,214					
1	대평리	441-6	제	5,808	970		국토교통부			국유지
2	대평리	441-119	전	20	14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36-3	대평마을회			
3	대평리	441-10	임	53	42	거창읍 대평리 936-3	중동마을회			
4	대평리	1512-0	도	4,727.1	12		거창군			국유지
5	대평리	441-58	전	577	256	거창읍 거열로7길 39, 106동 1504호	신국범			
6	대평리	441-149	전	548	538		거창군			국유지
7	대평리	441-24	대	130	130		거창군			국유지
8	대평리	441-28	대	130	130		거창군			국유지
9	대평리	441-29	대	130	130		거창군			국유지
10	대평리	441-36	전	130	130		거창군			국유지
11	대평리	441-37	대	130	130		거창군			국유지
12	대평리	441-45	대	130	130		거창군			국유지
13	대평리	1452-73	구	287	287		재무부			국유지
14	대평리	440-67	전	185	185		거창군			국유지
15	대평리	440-42	대	130	130	남상면 오계리 746	최태식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5,382	3,223					
16	대평리	440-30	대	130	130		거창군			국유지
17	대평리	440-31	대	152	152		거창군			국유지
18	대평리	440-40	대	146	146		거창군			국유지
19	대평리	440-12	집	161	110		거창군			국유지
20	대평리	440-44	전	6,288	664	상동 137-2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21	대평리	441-3	임	139	139		거창군			국유지
22	대평리	441-151	전	100	100	대평리 1128	김도중 외 8인			
23	대평리	441-152	전	52	52		거창군			국유지
24	대평리	440-11	제	7,586	1,102		거창군			국유지
25	대평리	440-68	전	628	628		거창군			국유지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2), FAX(055-940-3579), E-mail : kjs21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 연락처 :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8 - 86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9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9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1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군 계획 시설	거창 창포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남상	월평	소로	2	289	313	8	14,287	남상면 월평리 2203번지 ~ 2262-2번지	거창군고시 제74호 (2018.6.21.)	2018.07. ~ 2019.12.31.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건설과장)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83), FAX(055-940-3579), E-mail : tesla10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7,484.6	14,287					
1	남상면 월평리	2198	도	2,474	133		경상남도			
2	남상면 월평리	2197	도	2,368	270		경상남도			
3	남상면 월평리	2196-1	도	482	14		경상남도			
4	남상면 월평리	2362	구	2,839	234		농림축산식품부			
5	남상면 월평리	2202	도	2,007	377		경상남도			
6	남상면 월평리	2203	도	1,844	1,343		경상남도			
7	남상면 월평리	2204-1	도	640	492		경상남도			
8	남상면 월평리	2204-2	답	207	14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9	남상면 월평리	2204	답	1,946.5	1,523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이타운 102-902	김 정 연			
10	남상면 월평리	2205	답	1,202.4	335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이타운 102	김 정 연			
11	남상면 월평리	2206	답	1,917.7	61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13 거창군 거창읍 상동 76	김 광 식 김 영 모			
12	남상면 월평리	2364	도	970	263		농림축산식품부			
13	남상면 월평리	2255	도	2,509	904		경상남도			
14	남상면 월평리	2253-1	도	815	725		경상남도			
15	남상면 월평리	2253-2	답	254	25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6	남상면 월평리	2253	답	3,040.6	2,8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3길8(신월동)	함 판 석			
17	남상면 월평리	2250	답	540.3	28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13 거창군 거창읍 상동 76	김 광 식 김 영 모			
18	남상면 월평리	2251	답	112.3	3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71	염 수 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9	남상면 월평리	2252	답	1,330.7	4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076	염 학 수			
20	남상면 월평리	2366	구	2,335	54		농림축산식품부			
21	남상면 월평리	2261-1	도	1,225	236		경상남도			
22	남상면 월평리	2261-2	답	253	253		경상남도			
23	남상면 월평리	2261	답	573	573		경상남도			
24	남상면 월평리	2263	답	1,444.2	273		거 창 군			
25	남상면 월평리	2262	답	1,609.9	1,44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상월평길 51-1	염 학 수			
26	남상면 월평리	2261-3	도	34	27		경상남도			
27	남상면 월평리	2262-1	도	51	38		경상남도			
28	남상면 월평리	2262-2	답	37	37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29	남상면 월평리	2368	구	1,283	9		농림축산식품부			
30	남상면 월평리	2295-1	도	1,103	58		경상남도			
31	남상면 월평리	2295	답	265	239		경상남도			
32	남상면 월평리	2288	답	9772	241		거창군			

거창군 공고 제2018-863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2. 개정이유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2015.12.29)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시행규칙⇒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변경사항

1)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기술 조항 삭제(구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14조, 16조~17조, 19조~22조)

○정의, 명칭과 위치, 사용면적, 사용권의 소멸,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권의 취소, 수거 및 개장명령, 사용자의 신고의무, 분묘의 관리, 봉안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운영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2)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명칭의 명료화 (제2조)
3) 사용대상자 명확화 및 무연고자 등 사용 규정 추가(제3조)
4) 관련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및 감면대상자 재규정 (제4조~제5조)
5)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및 연장 사항 변경(제6조)
6) 중도반환 및 환불 규정(제7조)
7) 분묘의 형태(제8조)
8) 위탁운영사항 및 읍·면 위임사무 규정(제9조~10조)

다. 시행규칙 변경사항

1)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민원명 사용허가에서 사용신고로 변경(제2조)
2) 사용료 등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규정 추가(제3조)
3) 장사시설 이용시 실비부담과 사용원칙(4조~5조)
4) 분묘의 형태와 수탁자의 관리사항 규정 (6조~7조)
5)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조건 및 위탁조건 명시(제8조)
6) 안치 유골 반환 사항 규정(제9조)

4. 전부개정조례 · 시행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7. 10. ~ 2018. 7. 31. / 20일 이상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8. 7. 31.(화)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복지정책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3123, FAX: 055)940-308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일자	2018. 7. 10.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 이유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2015.12.29)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시행규칙⇒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변경사항

1)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기술 조항 삭제(구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14조, 16조~17조, 19조~22조)

○정의, 명칭과 위치, 사용면적, 사용권의 소멸,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권의 취소, 수거 및 개장명령, 사용자의 신고의무, 분묘의 관리, 봉안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운영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2)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명칭의 명료화 (제2조)

3) 사용대상자 명확화 및 무연고자 등 사용 규정 추가(제3조)

4) 관련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및 감면대상자 재규정 (제4조~제5조)

5)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및 연장 사항 변경(제6조)

6) 중도반환 및 환불 규정(제7조)
7) 분묘의 형태(제8조)
8) 위탁운영사항 및 읍·면 위임사무 규정(제9조~10조)

다. 시행규칙 변경사항
1)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민원명 사용허가에서 사용신고로 변경(제2조)
2) 사용료 등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규정 추가(제3조)
3) 장사시설 이용시 실비부담과 사용원칙(4조~5조)
4) 분묘의 형태와 수탁자의 관리사항 규정 (6조~7조)
5)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조건 및 위탁조건 명시(제8조)
6) 안치 유골 반환 사항 규정(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명칭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이하 "공설공원묘지"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의 공설공원묘지 내 봉안시설은 화장한 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묘지(매장지)에는 사체를 안치해야 한다.

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대상자) ① 공설공원묘지는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사망 시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무연고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행려자의 사체에 한정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 공설공원묘지의 선정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로서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이거나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만 사용료등을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관리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묘(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별표 2의 사용료 중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료 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군수가 정한 지역의 거주자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6. 무연고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행려 사망자의 사체

제6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및 연장) ①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15년, 20년, 25년, 30년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고자는 해당분묘(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반환 및 환불규정)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하며,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분묘의 형태 등)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설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기타 공설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설공원묘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운영위탁에 관한 별도의 협약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 신청
2.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4. 유골반환 신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관리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이 15년이 되어 추가로 15년 동안 그 공설공원묘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시 내야한다.

[별표 1]

공설공원묘지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	장묘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매장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매장 / 봉안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매장 / 봉안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매장 / 봉안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매장 / 봉안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매장 / 봉안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매장 / 자연장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매장 / 평장 / 봉안

[별표 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료(30년)		관리비(30년)		비 고
	기 준	금액(원)	기 준	금액(원)	
매장	1구당	600,000	1구당	400,000	
봉안묘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봉안당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평 장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자연장지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급기준

잔여기간	환급률	잔여기간	환급률	잔여기간	환급률
80%이상	75%	50% ~ 54%	45%	20% ~ 24%	15%
75% ~ 79%	70%	45% ~ 49%	40%	15% ~ 19%	12%
70% ~ 74%	65%	40% ~ 44%	35%	10% ~ 14%	10%
65% ~ 69%	60%	35% ~ 39%	30%	10%이하	5%
60% ~ 64%	55%	30% ~ 34%	25%		
55% ~ 59%	50%	25% ~ 29%	20%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신청 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제4항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조례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전액
2. 조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 50퍼센트

②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군수가 정한 지역"이란 사용할 공설공원묘지가 소재하는 법정리를 말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 증명서
2. 제5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독립유공자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
4.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 추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

제4조(실비부담) 군수는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이나 봉안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매장 부대비용 : 상석·비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
2. 봉안 부대비용 : 봉안용기 구입비 및 봉안시설 설치비

제5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원칙) ① 공설공원묘지 내 분묘의 안치는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부(夫婦)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공원묘지 사용신청을 하면서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향후 배우자의 안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접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신청자는 사용신고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그 배우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제6조(분묘의 구조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봉분) : 가로 100㎝, 세로 220㎝, 높이 40㎝
2. 비석 : 가로 25㎝, 세로 60㎝, 두께 12㎝
3. 상석 : 가로 60㎝, 세로 45㎝, 두께 12㎝
4. 비석의 표시 : 일련번호, 피매장자의 성명과 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분묘의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를 수탁한 자는 분묘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계약에는 위·수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유골반환 신청)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치 유골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사용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사
망
자</td><td>성　　명</td><td>(남, 여)</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td><td>사망장소</td><td colspan="2"></td></tr>
<tr><td>사망일자</td><td></td><td>사망원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신
청
자</td><td>성　　명</td><td>(남, 여)</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사망자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4">사용하고자 하는
시설</td><td>장묘시설의 명칭</td><td>구분</td><td>묘지 및
봉안번호</td><td>비고</td></tr>
<tr><td rowspan="3"></td><td>일반묘지</td><td></td><td></td></tr>
<tr><td>봉안묘</td><td></td><td></td></tr>
<tr><td>봉안당</td><td></td><td></td></tr>
</table>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 확인증

(앞쪽)

사 용 시 설	명 칭			
	구 분	일반묘지, 봉안묘, 봉안당		
	소 재 지			
	번 호		규 모	
사망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용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		부터 까지		
사용조건		뒤쪽 기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사 용 조 건

1. 앞쪽에 적힌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묘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묘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묘지에는 조례로 정한 형태 및 규격의 분묘 및 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분묘는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망자	성 명	(남, 여)	최초 사용연월일			
	공설묘지 소재지		분묘(봉안) 연고자			
	사용시설 종류					
사용기간 연장횟수		1회	연장 기간	~ (년)	사용료	
사용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거창군수 귀하

제 호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남, 여)	최초 사용연월일		
	공설묘지 소재지		분묘(봉안) 연고자		
	사용시설 종류		사용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	~ (년)	사용료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위탁관리 계약서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함에 있어 위탁자인 “거창군수”와 “위탁을 받은 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창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제2조 “위탁을 받은 자”는 ○○공설공원묘지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한다), 동 조례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설공원묘지의 모든 분묘 및 시설물은 “위탁을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거창군수”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분묘 및 시설물의 훼손은 “위탁을 받은 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 신고한 자에게 묘지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분묘 등의 설치 위치 및 방법을 묘지사용신고 확인증에 따라 묘지사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을 받은 자”는 묘지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묘지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거창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을 받은 자”는 묘지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거창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묘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 위탁 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9조 “거창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거 창 군 수 (인)

위탁을 받은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명(단체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유골반환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사용시설</td><td>명 칭</td><td colspan="3"></td></tr>
<tr><td>구 분</td><td colspan="3">공설묘지, 봉안묘, 봉안당</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안치번호</td><td></td><td>규 모</td><td>기</td></tr>
<tr><td rowspan="3">사 망 자</td><td>성 명</td><td>(남, 여)</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td><td>사망장소</td><td></td></tr>
<tr><td>사망일자</td><td></td><td>사망원인</td><td></td></tr>
<tr><td rowspan="3">사 용 자</td><td>성 명</td><td>(남, 여)</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사망자와의 관계</td><td></td></tr>
<tr><td>안치일자</td><td colspan="4"></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4"></td></tr>
<tr><td>유 골 반환사유</td><td colspan="4"></td></tr>
<tr><td>사 용 자 와의관계</td><td></td><td>관계공무원확인</td><td colspan="2"></td></tr>
</table>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장묘시설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붙임 3]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2016.1.29., 일부개정]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85호, 2017.12.12., 일부개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 2018.1.16.] [법률 제15363호, 2018.1.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5341호, 2017.12.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보건소)

(　　제정) 2009.05.06 조례 제1925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거창군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8-868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7. 10.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7. 10. ~ 2018. 07. 29.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에스에너지십일호 덕산2호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76호)	발전소명	㈜에스에너지십일호 덕산2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장 륜	황 화 순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1길 87, 111호	경남 거창군 신원면 내동2길 14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76 (토지 위)	
	설비용량	994.5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4. 03.	
	양수(예정)일	2018. 07. 10.	

나. 윤영 태양광발전소 ⇒ 상화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210호)	발전소명	윤 영 태양광 발전소	상 화 태양광 발전소
	대 표 자	이 윤 영	이 상 화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류동길 22의13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33번길 43, 201호 (온천동, 화성빌라트)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류동길 22의 13 (건물 위)	
	설비용량	28.8㎾(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6. 18.	
	양수(예정)일	2018. 07. 10.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소하천의 점용 허가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8 - 86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거 창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대표자 (성 명)	-	주 소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GOOD 프라임빌딩 5층
소하천명		가 끌 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567-5번지 등 2필지		
	면적	영구점용: 526.0㎡ 일시점용: 89.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점용기간	2018. 7. 10. ~ 2024. 9. 30.(영구)		
	목적 및 사유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량(4개소) 및 가설 교량(1개소)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8-9호

제2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18년 7월 13일(금) 17:00
2. 집회장소: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8년 7월 9일

거창군의회 의장 **이 홍 희**